

한·인도 CEPA 수출입유망품목의 효과 연구

- 2010년 수출입실적을 중심으로 -

임 목 삼*

-
- I. 서 론
 - II. 한·인도 CEPA 관세양허안 분석
 - III. 대인도 수출유망품목의 지정과 효과
 - IV. 결 론
-

주제어 : 한·인도 CEPA, 한·인도 FTA, 상품양허, 관세양허,
즉시철폐, 수출유망품목

I. 서 론

인도는 세계 11위의 경제규모(2009년 GDP 1조 3,101억 US\$, 경제성장률 7.7%)¹⁾와 세계 2위의 인구규모(2009년 기준 11억5,530만 명), 세계 4위의 소

* 성균관대학교 경영연구소 연구원, 성균관대학교 무역연구소 인도연구센터 객원연구원

1) 참고로 2009년 한국의 GDP는 8,325억 US\$로써 세계 15위 규모였고 World Bank의 'GDP projections'에 따르면 2010-2011년 경제성장률을 4.2%라고 예측한 바 있고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한국의 2010년의 경제성장률은 6.1%로 발표되었다.

비시장²⁾ 규모를 지닌 경제대국이다.

한·인도는 2009년 8월 ‘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CEPA’라 함), 이른바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을 체결하고 실효적인 양국 간의 비준을 한 바 있다. CEPA는 상품의 관세인하, 비관세장벽 제거 등 요소를 포함하면서 무역원활화 및 여타 협력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협정으로서 그 내용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자유무역협정과 유사하다. CEPA는 상품·서비스 무역·투자·경제 협력 등 전반적인 경제관계 교류를 포함하여 무역자유화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 개념의 FTA 보다 넓은 의미의 포괄적인 FTA를 의미한다.³⁾

한국이 인도와 CEPA를 통하여 가지는 기대효과는 거대한 시장으로서의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인도에 대한 자유무역협정을 서방선진 20개국 가운데 최초로 한국이 체결함으로써 인도의 내수시장 뿐만 아니라 선진시장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기대할 수 있고, 인도의 입장에서는 이미 인접국인 스리랑카·싱가폴·파키스탄(SAFTA⁴⁾) 등 서남아시아 및 주변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나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미약하여 한국과의 협력을 계기로 서방국가와의 교류를 본격화 시키려는 의도에서 체결되었다.

더군다나 인도는 제조업 부문의 취약한 경쟁력, 관련제품군의 고수입관세율의 악순환구조에서 비롯된 2차 산업의 경쟁력 보안을 한국과의 CEPA를 계기로 개선하겠다는 의도도 한·인도 CEPA의 기대효과일 것이다.⁵⁾

2) 인도경제의 GDP는 세계 11위이나 구매력 기준(PPP; Purchasing Power Parity)으로는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Source: World Bank Data Stastic)

3) FTA라는 개념 대신 ‘CEPA’라는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인도와 태국의 FTA 결과 태국의 대인도 수출이 체결 이후 104% 상승한 반면 인도의 대태국 수출은 25.5%의 증가율을 보여 인도 국내의 산업계 및 정계의 비판에 따른 결과에서 비롯되었다.(중소기업연구원, “한·인도 CEPA 체결에 따른 중소기업의 영향과 대응과제”, 2009. 12, pp. 47~48.)

4) SAFTA(South Asia Free Trade Area)는 파키스탄에서 개최된 SARRC(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에서 1993.4월에 체결된 바 있는 SAPTA(SARRC 특혜무역협정)에 기초한 협정으로서 2004.1월 서명한 바 있다. SAFTA는 관세 인하를 통한 5500여 공산품·농산물의 무역자유화 협정으로서, SAFTA 7개국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제가 나은 인도·파키스탄·스리랑카 3개국은 3년 안에 관세율을 5% 아래로 낮추기로 했고 방글라데시·부탄·몰디브·네팔은 점차 관세를 낮춰 10년 내에 나머지 3개국 수준에 맞추기로 했다. 2004년 말 ‘쓰나미’로 특히 피해가 컸던 스리랑카는 다른 회원국의 양해 아래 7월까지 동참키로 했다. 각국은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품목의 20% 내에서 관세 인하 제외 품목을 결정한 바 있다.

한·인도 CEPA에 의한 경제적인 효과를 강조하고자 의도한 대국민 홍보는 협정이 체결되기 이전 또는 체결 직후(2009년 말부터 2010년 초까지)에 정부 부처나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에 의하여 수출유망품목의 제안이라는 형태로 제시된 바 있다.⁶⁾

본 연구는 한·인도 CEPA 협약의 효력이 발효된 시점으로부터 1년 동안의 HS⁷⁾품목별 수출입실적을 수출유망품목과 비교하여 봄으로써 수출유망품목의 선정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단기적인 한·인도 CEPA의 경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우선, 시장에 즉시 영향을 주는 요인인 관세양허안⁸⁾의 양허수준'E-0'즉, 관세가 즉시철폐되는 품목의 수출입실적을 산출하였고, 다음으로 한·인도 수출입 상위품목을 산출하여 시장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수출입유망품목의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게

5) 제조업 중심국가와 달리 인도의 경우는 서비스업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가운데 제조업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서비스업 주도형 성장모델의 성격을 보이고 있다. 총 GDP에서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51.7%인 반면, 광공업 비중은 27.1%(제조업은 16.1%)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반해 2004년 기준 총 GDP에서 광공업/서비스 분야가 차지하는 주요국의 비중은 중국이 46.2/40.7%, 한국은 40.6/55.6%로 나타나고 있다.(주인도대사관, “인도 통상·투자 진출 안내서”, 2006. 12, p. 4)

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보건복지가족부, 산업연구원, 외교통상부, 중소기업연구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의 자료참조.

7) HS는 1988년 발효된 상품분류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정식명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이다. HS의 구성은 류(Chapter) 두자리, 호(Heading) 두자리, 소호(Sub-Heading) 두자리의 순으로 배열되어 총 6자리로 구성되어있고, 소호 아래 7단위부터는 각국이 자체실정에 맞게 임의로 설정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0단위로 소호를 세분류하여 HSK(Harmonized System of Korea)로 운영하고 있다.

8) 한·인도 CEPA의 양허유형 및 관련 코드

| | |
|-----|--|
| E-0 | 협정 발효일(2010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는 관세율 즉시철폐를 의미 |
| E-5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이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시행 4년차 1월부터 무관세가 적용되는 양허세율 |
| E-8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이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철폐되어 시행 7년차 1월부터 무관세가 적용되는 양허세율 |
| EXC | 양허제외 |
| RED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로부터 1~5% 범위내로 인하되어 시행 7년차 1월부터 1~5%범위의 관세가 적용 |
| SEN |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기준세율로부터 50% 까지 인하되어 시행 9년차 1월부터 50%의 관세가 적용 |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인도 무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출입유망품목의 선정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 한·인도 CEPA 관련 협정서의 관세양허안을 양국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2010년의 수출입통계자료를 품목별로 조사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정부기관(외교통상부, 보건복지가족부, 관세청) 및 민간기관(한국무역협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산업연구원)의 수출유망품목을 수출입실적과 비교하였다.

II. 한·인도 CEPA 관세양허안 분석

1. 한·인도 CEPA 관세양허 수준

1) 인도의 대한국 양허수준

한·인도 ‘CEPA’ 협상에 따른 인도의 상품관련 관세양허안은 한국의 여타 FTA 체결에 비하여 소극적이었다. 인도의 양허수준은 HS 10단위를 기준으로 총 9,801개 품목 중 체결 후 즉시 관세를 철폐하거나 조정한 양허유형 ‘E-0’ 품목은 460개(이 가운데 관세철폐의 대상품목은 280개)이고, 양허유형 ‘E-5’ 품목은 448개, 양허유형 ‘E-8’ 품목은 3,358개로 조사되었다. 양허유형 ‘RED’ 또는 ‘SEN’ 품목은 각각 941개, 704개에 해당되어 대부분의 양허품목이 장기간에 걸쳐 관세가 철폐되거나 조정되도록 양허기간을 협정하였다.

인도의 대한국 CEPA 협정안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조정된 품목을 HS Chapter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보면, 한·인도 CEPA 협정 발효 후 세율이 0%가 되는 즉시철폐 품목은 42류인 원피·가죽이 25개, 43류인 모피·모피제품이 7개, 49류인 서적·신문·인쇄물은 9개, 84류인 보일러·기계류는 56개, 85류인 전기기기·TV·VTR은 140개, 92류인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는 32개, 97류인 예술품·골동품은 3개였다. 세율이 7.5%로 하향조정되는 품목은 70류인 유리 7개이고, 12.5%로 조정된 품목은 55류인 인조·스테이플 섬유 2개, 56류인 워딩·부직포 6개, 84류인 보일러·기계류 56개, 85류인 전기기기·TV·VTR 84개, 92류인 광학·의료·측정·검사·정밀기기 24

개 품목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에도 전기에너지, 질산비료, 의료용품, 화학공업생산물 1~2개 품목의 세율이 즉시철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의 대한민국 상품별 양허수준이 원피류와 전기기기, 기계류, 광학기기에 집중하여 관세율을 철폐 및 조정한 이유는 한·인도 CEPA 이전에 이미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양허가 이루어 졌고, 섬유·화학·생활용품·자동차에 대해서는 민감한 품목으로 간주하여 소극적이거나 양허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산업연구원의 연구보고서⁹⁾는 분석한 바 있다.

2) 한국의 대인도 양허수준

한국의 양허수준은 인도보다 적극적인 관세철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양허수준은 HS 10단위를 기준으로 10,496개 품목 중 체결 후 즉시 관세를 철폐하거나 조정한 양허유형 ‘E-0’ 품목은 6,824개(이 가운데 관세철폐의 대상품목은 1,498개)이고, 양허유형 ‘E-5’ 품목은 2,310개, 양허유형 ‘E-8’ 품목은 850개로 조사되었다. 양허유형 ‘RED’ 또는 ‘SEN’ 품목은 각각 34개, 478개에 해당되어 대부분의 양허품목이 단기간에 관세가 철폐되거나 조정되도록 양허기간을 협정하였다.

한국의 대인도 CEPA 협정 안에서 관세가 즉시 철폐되거나 조정된 품목을 HS Chapter를 기준으로 분석하여 보면, CEPA 협정 발효 후 세율이 0%가 되는 즉시철폐 품목은 12류인 식물의 종자 22개, 28류인 무기화합물 17개, 29류인 유기화합물 64개, 30류인 의료용품 54개, 30류인 필름류 10개, 38류인 화학공업생산물 19개, 47류인 펄프류 25개, 48류인 종이류 186개, 49류인 인쇄물 29개, 72류 철강 173개, 73류 철강제품 91개, 84류 기계류 267개, 85류 전기기기 216개, 86류 철도차량 14개, 87류 특수차량 10개, 88류 항공기류 41개, 89류 선박류 13개, 90류 광학·정밀기기류 110개, 93류 무기류 14개, 94류 가구류 46개, 95류 완구류 39개, 97류 예술품 류 13개였다. 인도의 양허수준 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인 1%로 하향조정 되는 품목은 155개이고, 2%로 조정된 품목은 134개, 3%로 조정된 품목은 219개, 5%는 393개, 5.5%는 534개, 6.5%는 1030개, 8%는 2,823개로 품목으로 조사되었다.

9) 산업연구원, “한·인도 CEPA 체결이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 2009. 9.

3) 한·인도의 양허수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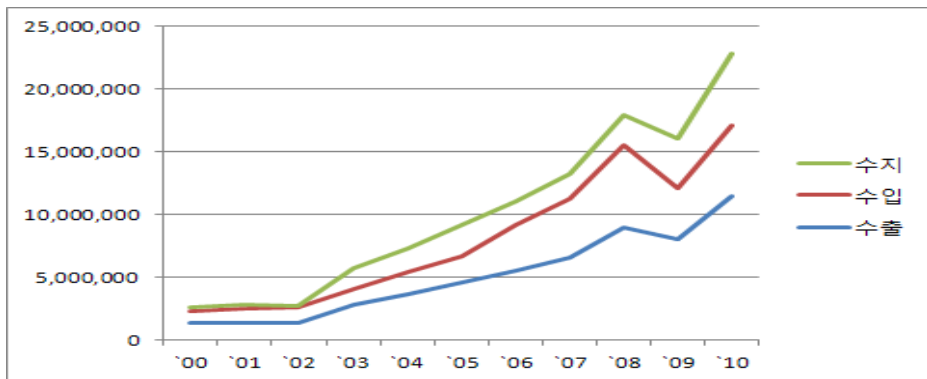
한·인도의 CEPA의 결과 인도는 자국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친 관세인하 또는 철폐의 양허안을 채택한 반면 한국은 협정의 체결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한 대인도 관세양허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음 장에서 언급하겠지만 한국의 수입관세율은 인도의 고관세율 정책에 비해 저관세율 정책을 취하고 있다. 한국의 수입관세율은 농수산물과 같이 특정한 산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원자재에 대해서는 대부분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관세율 정책을 근거로 하여 보면, 인도와의 협상에서 한국이 제안한 관세양허안이 대인도협상을 위하여 특별히 제안한 것이 아니라는 논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리를 다음 장에서 검증하여 보니 대인도 관세양허안은 여타의 협력관세, 특혜관세의 수준보다 낮게 양허수준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한국의 적극적인 양허수준의 제시가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최근 한·인도 수출입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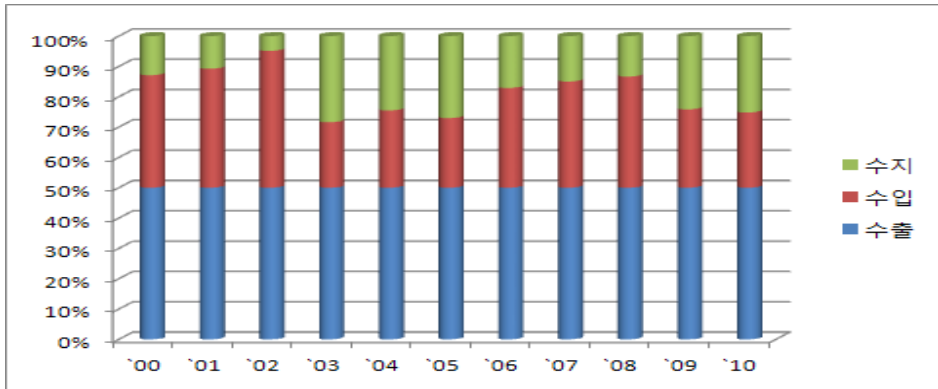
한국의 대인도 수출입실적 추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2002년을 기점으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2008년을 기점으로 잠시 수출입이 감소하였으나 한·인도 CEPA가 발효된 이후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대인도 수출입 추이]



* (단위: 천 US\$)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자료 가공.

[연도별 대인도 수출입실적과 무역수지 비중]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자료 가공.

수출과 수입의 비중에서는 수출이 두배정도 수입을 상회하고 있어 무역수지 또한 흑자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0년도에 한국의 대인도 수출규모는 11,434,596천 US\$로 2009년에 수출이 감소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수입은 2008년 6,581,241천 US\$에서 2010년 5,674,456천 US\$로 점차 감소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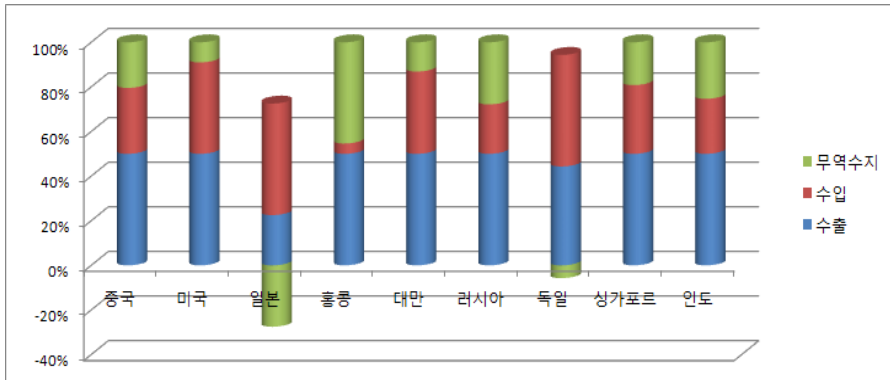
3. 대인도 무역의존도

한·인도 CEPA가 체결된 이후 수출의 규모는 증가한 반면 수입의 비중은 낮아져 인도는 2010년 주요수출입국가 순위 16위에 해당되었다.

한국의 무역규모는 2010년 9천억 US\$에 육박하고 있으나 상위 10개국을 기준으로 중국과 일본, 미국의 비중이 70% 가까이 되고 있어 무역의존도가 일부 국가에게 편중된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아래의 그림은 2010년도 무역수지를 기준으로 주요대상국을 구분한 것이다. 인도는 2009년부터 한국의 10대 무역수지 흑자국가로 분류되어 2010에도 대인도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지속되고 있다.

[2010년 무역수지 기준 한국의 주요교역 대상국]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자료 가공.

주요 수출입국가를 기준으로 인도와의 교역규모를 비교하여 보면, 주요수출국에서는 7위, 주요수입국에서는 16위에 해당되고 있으나 무역수지에 있어 여타의 국가보다 비교적 많은 흑자를 보이고 있는 국가로서 인도의 무역비중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Ⅲ. 대인도 수출유망품목의 지정과 효과

1. 2010년 대인도 주요 수출입품목의 동향

한·인도 CEPA가 발효된 2010년의 대인도 수출입실적을 HS Chapter를 기준으로 하여 상위 15위의 품목을 금액순으로 조사하였다.

대인도 전체 수출 중 1천 US\$ 이상 실적을 보인 품목은 97개 품목분류 가운데 89개로 조사되었고, 이 가운데 CEPA의 양허대상이 된 품목은 15개 품목으로 나타났다. 수출실적 상위 15위 내의 CEPA 양허대상 품목은 아래 표와 같이 6개 품목이다.

< 표 1 > [대인도 HS Chapter기준 품목별 금액기준 수출실적]

| 순위 | HS | 품목명 | 2009 | | 2010 | |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 | 총계 | 8,013 | -10.7 | 11,434 | 42.7 |
| 1 | 84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 1,211 | -10.2 | 1,885 | 55.7 |
| 2 | 85 |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 1,337 | -3.9 | 1,775 | 32.8 |
| 3 | 72 | 철강 | 1,077 | -5.9 | 1,522 | 41.3 |
| 4 | 87 | 일반차량 | 1,028 | -22.9 | 1,343 | 30.7 |
| 5 | 39 | 플라스틱 및 그 제품 | 663 | 44.9 | 885 | 33.4 |
| 6 | 29 | 유기화학품 | 386 | 33.5 | 718 | 86 |
| 7 | 89 | 선박과 수상구조물 | 284 | -49.5 | 715 | 151.5 |
| 8 | 27 | 광물성연료류 | 456 | -42.4 | 607 | 33 |
| 9 | 40 | 고무와 그 제품 | 157 | -23.7 | 305 | 94.4 |
| 10 | 73 | 철강의 제품 | 303 | 4.5 | 293 | -3.3 |
| 11 | 48 | 지와 판지 | 134 | -30 | 168 | 25.4 |
| 12 | 90 | 광학기기, 측정기기, 정밀기기류 | 137 | 51.7 | 165 | 20.7 |
| 13 | 74 | 동과 그 제품 | 106 | 39.2 | 133 | 26.3 |
| 14 | 76 | 알루미늄과 그 제품 | 59 | 5.4 | 101 | 69.5 |
| 15 | 38 |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 66 | 18.5 | 99 | 49 |

* (단위: 백만 US\$,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자료 가공.

수입의 경우, 1천 US\$ 이상의 수입실적을 보인 품목은 97개 품목분류 가운데 93개로 조사되었고, 이 가운데 CEPA의 양허대상이 된 품목은 18개로 나타났다. 수입실적 상위 15위¹⁰⁾ 내에 해당되는 품목은 아래 표와 같이 1개 품목으로 산출되었다.

10) 15개 품목이 대인도 전체 수입에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91.8%, 2010년에는 91.9%로 수입역시 일부 품목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표 2 〉 [대인도 HS Chapter기준 품목별 금액기준 수입실적]

| 순위 | HS | 품목명 | 2009 | | 2010 | |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 | 총계 | 4,141 | -37.1 | 5,674 | 37 |
| 1 | 27 | 광물성연료 | 2,289 | -41.9 | 3,106 | 35.7 |
| 2 | 72 | 철강 | 164 | -68.5 | 358 | 118.4 |
| 3 | 52 | 면 | 206 | -5.7 | 344 | 66.6 |
| 4 | 29 | 유기화학품 | 261 | -21.1 | 308 | 17.9 |
| 5 | 76 | 알루미늄과 그 제품 | 37 | 522.5 | 197 | 431.1 |
| 6 | 23 | 식품공업시 생기는 잔유물, 웨이스트, 조제사료 | 185 | -46.4 | 147 | -20.3 |
| 7 | 71 | 귀금속,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 222 | 154.5 | 131 | -41 |
| 8 | 84 | 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 122 | -20.4 | 124 | 2.1 |
| 9 | 79 | 아연과 그 제품 | 27 | 35.2 | 101 | 268 |
| 10 | 26 | 광, 슬랙, 회 | 91 | -33.3 | 88 | -3.1 |
| 11 | 78 | 연과 그 제품 | 13 | 886888.3 | 66 | 406.2 |
| 12 | 32 | 염료, 안료, 페인트, 잉크 | 48 | -3.3 | 63 | 32.5 |
| 13 | 12 | 종자, 공업용, 의약용식물, 짚, 사료식물 | 41 | -32.1 | 63 | 53.3 |
| 14 | 85 | 전기기와 그 부분품 | 53 | -54.6 | 59 | 10.5 |
| 15 | 24 | 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 35 | 9.3 | 51 | 44.3 |

* (단위: 백만 US\$,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자료 가공.

상기의 주요 수출입 품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위부터 15위에 해당하는 품목의 수출입 비중은 전체 수출입실적 대비 2009년에는 수출이 92.5% 수입이 91.8%였고 2010년에는 수출이 93.8% 수입이 91.9%로 더욱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주요 수출입 품목을 HS 10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1위부터 19위까지 조사하여 보면 구체적인 수출입품목이 산출된다. 아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개 품목들이 전체 수출입실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은 2009년 기준 전체의 41.9% 수입은 76.4%였고, 2010년 기준 46.4% 수입은 78.4%에 해당된다.

여기서 HS Chapter를 기준으로 하여 분석한 상위 15개 수출입 품목과 HS 10단위 기준 상위 수출입 품목을 수평적으로 비교하기 보다는 한·인도 CEPA 전체 양허세율의 품목을 HS 10단위를 기준으로 분류한 인도 측의 양

허세율 9,801개 품목과 한국 측의 10,496개 품목 가운데 아래 도표의 일부 품목에 수출입 비중이 매우 높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 표 3 〉 [대인도 HS10단위 기준 품목별 금액기준 수출실적]

| 순위 | HS | 품목명 | 2009 | | 2010 | |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 | 총계 | 8,013 | -11 | 11,434 | 43 |
| 1 | 8708999000 | 일반차량 새시 | 895 | -21 | 1,155 | 29 |
| 2 | 8901200000 | 선박 탱커 | 281 | -35 | 691 | 146 |
| 3 | 2710195020 | 윤활유기유 | 367 | -21 | 500 | 36 |
| 4 | 8517701029 | 유선전화부품 | 319 | - | 364 | 14 |
| 5 | 2917361000 | 테레프탈산 | 96 | 259 | 304 | 218 |
| 6 | 8402901000 | 증기발생보일러의 부품 | 64 | 117 | 293 | 357 |
| 7 | 3904100000 | 폴리(염화비닐) | 159 | 65 | 236 | 49 |
| 8 | 4002190000 | 합성고무 | 91 | -24 | 189 | 108 |
| 9 | 720836100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 203 | 33 | 184 | -9 |
| 10 | 720851100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 111 | 63 | 173 | 56 |
| 11 | 8504230000 | 유압식 변압기 | 0 | - | 170 | - |
| 12 | 7209179000 | 냉간압연 코일의 것 | 127 | -2 | 169 | 33 |
| 13 | 8517121090 | 무선통신전화기 | 34 | -47 | 164 | 379 |
| 14 | 4801000000 | 신문용지 | 111 | -36 | 150 | 35 |
| 15 | 8479899099 | 기계류 기타 | 84 | -37 | 134 | 60 |
| 16 | 8529909649 | TV 기타 | 78 | - | 127 | 63 |
| 17 | 7210700000 | 철 또는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 | 54 | -11 | 99 | 85 |
| 18 | 7408110000 | 동의 선 | 73 | 56 | 99 | 35 |
| 19 | 7308909000 | 철강제 구조물 | 205 | 205 | 92 | -55 |

* (단위: 백만 US\$,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자료 가공.

상기 도표 상에 구성된 품목 가운데 한·인도 CEPA를 통하여 양허된 품목을 조사하여 보면, 890120.00은 양허수준이 'E-8' 12.5%, 271019.50은 양허수준이 'SEN' 10%, 840290.10은 양허수준이 'E-5' 12.5%, 720836.10은 양허수준이 'E-5' 5%, 720851.10은 양허수준이 'E-8' 5%, 850423.00은 양허수준이 'E-8' 12.5%, 720917.90은 양허수준이 'E-8' 5%, 480100.00은 양허수준이 'E-8' 12.5%, 721070.00은 양허수준이 'E-5' 5%, 730890.90은 양허수준

이 'E-5' 12.5%로서 즉시철폐 대상 세율은 없었다. 따라서 한·인도 CEPA 협정 체결의 결과에 따른 단기적인 수출 수혜대상 품목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 표 4 > [대인도 HS10단위 기준 품목별 금액기준 수입실적]

| 순위 | HS | 품목명 | 2009 | | 2010 | |
|----|------------|--------------------|-------|-------|-------|-----|
| | | | 금액 | 증가율 | 금액 | 증가율 |
| | | 총계 | 4,141 | -37 | 5,674 | 37 |
| 1 | 2710114000 | 나프타 | 2,281 | -41 | 3,059 | 34 |
| 2 | 7601100000 | 합금하지 아니한 알루미늄 | 36 | 1,120 | 185 | 406 |
| 3 | 7202410000 | 페로크로뮴 | 80 | -60 | 174 | 117 |
| 4 | 5205231000 | 표백 또는 머서처리하지 아니한 것 | 96 | -2 | 161 | 68 |
| 5 | 7901110000 | 아연 | 27 | 51 | 101 | 268 |
| 6 | 7112991000 | 귀금속(잔재물) | 188 | 318 | 85 | -55 |
| 7 | 7201102000 | 비합금 선철(제강용) | 0 | - | 73 | - |
| 8 | 2901241000 | 1,3-부타디엔 | 38 | -58 | 64 | 70 |
| 9 | 2306490000 | 유채씨의 것 | 69 | -41 | 60 | -13 |
| 10 | 7202300000 | 페로실리코망간 | 11 | -81 | 58 | 426 |
| 11 | 1207400000 | 참깨 | 38 | -33 | 58 | 52 |
| 12 | 5205241000 | 면사 | 36 | 37 | 52 | 43 |
| 13 | 2601111000 | 적철광 | 49 | 14 | 51 | 4 |
| 14 | 2304000000 | 대두유 | 89 | -48 | 49 | -45 |
| 15 | 7801109000 | 연의 괴 | 6 | - | 45 | 608 |
| 16 | 7102390000 | 다이아몬드 원석 기타 | 32 | -20 | 44 | 36 |
| 17 | 5205221000 | 면사 | 22 | 15 | 42 | 91 |
| 18 | 2941909099 | 페니실린 기타 | 29 | -2 | 40 | 36 |
| 19 | 2401201000 | 잎담배(황색종) | 27 | 2 | 39 | 40 |

* (단위: 백만 US\$, %) 한국무역협회 수출입통계자료 가공.

한·인도 CEPA를 통하여 양허한 한국의 품목을 금액기준 상위 19개 대인도 수입품목과 비교하여 보면, 271011.4000은 1% 'E-0', 760110.0000은 3% 'E-0', 720241.0000은 3% 'E-0', 790111.0000은 5% 'E-0', 711299.1000은 2% 'E-0', 720110.2000은 2% 'E-0', 290124.1000은 0% 'E-0', 230649.0000도 0% 'E-0', 720230.0000은 양허수준 'E-8' 8%, 520524.1000은 양허수준 'SEN' 8%, 260111.1000은 1% 'E-0', 230400.0000은 1.8% 'E-0', 780110.9000은 5% 'E-0', 710239.0000은 양허수준이 'E-8' 5%로써 대부분이 낮은 세율로 조정하거나 0%로 즉시철폐한 품목이었다.

한·인도 CEPA가 발효되기 이전과 이후에 적용되었던 관세율의 종류와 비교하여 보면 271011.4000은 WTO 협정세율 대비 -4% 수혜, 790111.0000은 WTO 협정세율 대비 -5% 수혜, 720230.0000은 WTO 협정세율 대비 -2% 수혜, 520524.1000은 WTO 협정세율 대비 -5% 수혜, 780110.9000은 WTO 협정세율 대비 -5%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고, 760110.0000, 720241.0000은 아태협정 양허관세(APTA¹¹⁾) 보다 +2% 상승, 710239.0000은 아태협정 양허관세 보다 +2.5%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711299.1000, 720110.2000, 290124.1000, 230649.0000, 260111.1000, 230400.0000은 WTO 협정세율과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한·인도 CEPA 협정에 근거한 대인도 수입관세가 낮아진 품목은 271011.4000, 790111.0000, 720230.0000, 520524.1000, 780110.9000에 해당 되고 나머지 품목은 이전의 적용 관세율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년 대비 수입실적의 증가율을 보면 각각 34%, 268%, 426%, 43%, 608%가 상승되어 한·인도 CEPA를 계기로 대인도 수입에 있어서는 교역량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 기관별 대인도 수출유망품목의 지정

1) 기관별 한·인도 CEPA의 경제효과 전망

한·인도 CEPA가 체결 될 직전·직후의 시기에 맞추어 정부기관 및 민간 연구기관은 한국의 대인도 교역이 성장일로를 거듭하게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개진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¹²⁾은 상대적으로 높은(11.5%) 관세율의 철폐 및 인하로 인하여 양국의 교역이 장기적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한국과 인도의 관세철폐 비중이 각각 84.7%, 74.5%이고, 양허율 또한 지금까지 한국이 체결한 FTA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고, 더군다나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가 완성되는 기간은 5~10년으로 미국 또는 EU와의 FTA가 3년 내에 각각

11) 2006.9.1.부터 발효된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협정(방콕협정)"으로서 회원국은 한국·중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로 구성되어 있다.

12)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인도 CEPA 주요내용과 경제적 효과", 2009. 9, p. 3.

91.4%, 99% 양허되는 경우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장기적이어서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외교통상부는 정부합동 FTA 설명회(2009년 11월 12일)에서 한·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공청회 자료¹³⁾등을 인용하여 2004년 기준대비 한·인도 CEPA 체결 이후 10년간 실질 GDP가 0.17%(1조 3천억 KRW) 증가되고, 39억 USD의 산업생산효과가 예상되며, 제조업 무역수지가 14억 USD로 개선될 것이라고 하였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¹⁴⁾은 한·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를 한국의 경쟁국 보다 우선한 BRICs 국가와의 FTA 체결이라는 점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인도의 관세율 양허수준이 한국과 체결하거나 체결될 여타의 FTA 보다 낮고 인하 및 철폐기간이 장기간이지만 경쟁국인 일본, EU, 중국 보다 우선적으로 FTA를 체결함으로써 FTA의 선점효과가 발생되어 중장기적으로는 유리하다고 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¹⁵⁾은 한·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를 양국의 입장에서 각각 분석한 것이 특징적이다. 한국의 경제적 효과는 상기에서 언급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인도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인도 CEPA는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하고 있다. 한·인도 CEPA를 체결하게 된 인도의 동기는 세계적인 지역 경제통합의 추세에 소외되지 않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는 것과 기술도입이나 투자가능성이 유럽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일본과의 FTA를 가속화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였다는 것, 그리고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유하려는 전략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다. 즉, 한국과의 FTA를 조기에 성사시킴으로서 일본이나 중국의 경쟁국인 한국이 인도 시장을 선점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여 협상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한 계산된 전략이었다는 것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¹⁶⁾는 한·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를 신흥 거대시장

13) 외교통상부, “한·인도 CEPA 공청회”, 한국무역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 2005. 12.

1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인도 CEP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과제”, 2009. 8, p. 11.

15) 중소기업연구원, 전계서, pp. 44~50.

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인도 CEPA 이후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2009. 8.

의 선점효과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고 있다. 구매력 기준지수가 세계 4위인 11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중산층의 증가 폭이 여타의 국가들 보다 두터워 거대 잠재 소비시장으로서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관세율 인하 및 철폐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의 대인도 수출입 비중이 중국과 일본,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한·인도 CEPA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 산 이유는 동남아시아의 무역비중을 높여 편중된 무역의 비중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를 위한 측면과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개발의 정도가 미숙한 신흥개발국인 인도에 대한 전략적인 선점의 효과를 경쟁국들 보다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된다.

2) 기관별 대인도 수출입유망품목

한·인도 CEPA로 인하여 예상되는 수출유망품목에 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와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다음과 같이 수출유망품목을 제안한 바 있다.

< 표 5 > [관세철폐로 인한 한국과 인도의 양자간 수출에 대한 영향¹⁷⁾]

| | 한국의 대인도 | 인도의 대한민국 |
|--------|---------|----------|
| 기초산업 | 1 | 224 |
| 가공식품 | 7 | 51 |
| 섬유, 의류 | 398 | 118 |
| 화학 | 298 | 52 |
| 금속 | 263 | 22 |
| 수송장비 | 1,141 | 35 |
| 전기전자 | 229 | 5 |
| 기계류 | 349 | 13 |
| 기타 제조업 | 151 | 19 |
| 합계 | 2,842 | 539 |

* (단위: 백만 US\$, %)

17) 중소기업연구원, 전게서, p. 5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기계류, 철강 및 비철금속류, 전기전자, 자동차 부품, 화학제품을 대분류로 하여 세부 유망품목을 선정사유와 함께 제시하고 있다. 기계류의 경우에는 제약기계와 산업용보일러, 산업용 밸브, 건설장비를 산업성장의 수요증가를 원인으로 하여 수출유망품목에 선정하였고 철강 및 비철금속의 경우에는 철강(열연·냉연·도금강판)과 아연이 품질경쟁력과 건설 수요증가로 인하여 유망품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전기전자의 도난 및 화재경보기와 자동차 부품의 차량용 디젤엔진과 특수차량 새시부품, 화학제품의 타이어와 페인트 등도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철강, 석유제품, 석유화학, 기계, 정밀화학, 섬유, 전자, 비철금속 등의 상품을 기준으로 업종별 영향 및 효과를 분석하였다. 자동차¹⁸⁾는 양허가 제외될 것이기 때문에 수출의 경우에는 인도 현지 생산체제의 구축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하였고 자동차 부품의 경우에는 한·인도 CEPA의 결과에 따라 양허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인하될 것이기 때문에 향후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수출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철강과 석유제품, 석유화학, 기계, 정밀화학, 섬유, 전자, 비철금속의 경우도 자동차 부품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인하될 것이므로 수출유망품목으로서의 효과는 양허가 완료된 이후에나 전망이 밝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한·인도 CEPA 효과분석에서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대인도 수입에 대한 전망을 언급하고 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경우 한국의 대인도 양허관세율이 철폐될 것이기 때문에 인도현지에 설비를 갖추고 있는 일본계 대인도 합자회사의 상품이 수입될 수 있고 정밀화학 대분류군 가운데 인도의 복제약은 세계적인 산업경쟁력을 기반으로 의약품 수입이 증가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경우에는 관세철폐에 따른 분야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한국의 대인도 수출은 수송장비, 섬유 및 의류, 기계, 화학 등의 분야가 대폭 증가할 것이고 대인도 수입은 기초산업, 섬유 및 의류 분야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구체적으로 자동차 부품,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엘리베이터의

18) 한국의 대인도 양허안을 보면, 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인 승용형, 화물운송용(덤프트럭 제외; 'E-0' 양허) 자동차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철폐되는 'E-5' 양허유형을 적용하였고, 인도의 대한국 양허안의 경우에는 승용형(관세율 100%) 및 화물운송형(10~12.5%)의 양허가 제외되었다.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 표 6 > [각 기관의 수출입유망품목]

| | | |
|------------|----|--|
| 보건복지가족부 | 수출 | 의료기기(초음파영상기, 영상진단기) |
| | 수입 | 의약품 원료, 두발용 화장품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수출 | 기계류(제약기계, 산업용보일러, 산업용 밸브, 건설장비) 철강 및 비철금속(철강(열연·냉연·도금강판), 아연) 전기전자(도난 및 화재 경보기) 자동차 부품(차량용 디젤엔진, 특수차량 새시부품) 화학제품(타이어와 페인트) |
| 한국무역협회 | 수출 | 자동차 부품, 철강, 석유제품, 석유화학, 기계, 정밀화학, 섬유, 전자, 비철금속 |
| | 수입 | 자동차 부품, 정밀화학(복제약) |
| 중소기업연구원 | 수출 | 수송장비, 섬유 및 의류, 기계, 화학 |
| | 수입 | 기초산업, 섬유 및 의류, 자동차 부품,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엘리베이터 |
| 산업연구원 | 수출 | 기계, 자동차, 화학, 철강 |
| | 수입 | 화학, 섬유, 기계 |

보건복지가족부는 한·인도 CEPA로 인하여 보건의료분야에 있어 2010년 이후 향후 5년 간¹⁹⁾ 320만 USD의 적자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²⁰⁾ 수출유망품목으로 초음파 영상진단기나 생체현상측정기기 등의 의료기기를 지적하였고 수입의 경우에는 한국의 대인도 양허유형이 즉시철폐인 의약품 원료와 두발용 화장품을 들었다.

산업연구원의 경우에는 한·인도 CEPA가 발효될 경우 대인도 제조업의 수출증대 효과가 10년 동안 연평균 1억 7,700만 USD 증가할 것이라고 하고 있다. 기계, 자동차, 화학, 철강 순으로 제조업의 수출이 증대될 것이며, 반면 화학, 섬유, 기계 분야가 수입증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 한국의 의료기기에 대한 인도의 대한민국 양허유형은 'E-5'로 5년 이내에 12.5%로 인하된다.

20)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한·인도간 관세철폐, 의료기기 및 제약업체에 호재”, 보건복지가족부 통상협력 담당관실, 2010. 8. 6.

3. 지정된 수출유망품목의 수출입 효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기계류인 제약기계와 산업용보일러·산업용 밸브·건설장비, 철강(열연·냉연·도금강판), 전기전자의 도난 및 화재경보기, 자동차 부품의 차량용 디젤엔진과 특수차량 새시부품, 화학제품의 타이어와 페인트를 수출이 유망할 것으로 제안하였으나 한·인도 CEPA 협약의 수혜품목은 증기발생보일러 부품(수출증가율 357% 대인도 수출실적 6위), 철강(수출증가율 50% 대인도 수출실적 9위)으로 나타났다.

유·무선전화기와 일반차량의 새시는 양허세율과 상관없이 수출실적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는 수출의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철강·석유제품·석유화학·기계·정밀화학·섬유·전자·비철금속을 수입의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정밀화학(복제약) 제품을 유망한 품목군으로 제안하였으나 제안범위가 방대하여 실효적인 수혜품목의 검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제안하였던 품목 가운데 수출의 섬유와 비철금속, 정밀화학 품목과 수입의 자동차 부품, 정밀화학 품목에 대한 예측은 유효하지 않았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수출의 경우에 수송장비·섬유·기계·화학 등의 분야가 대폭 증가할 것이고 수입은 기초산업·섬유 분야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구체적으로 자동차 부품·디젤엔진·철도용 기관차·엘리베이터의 수출이 유망할 것이라고 한 바 있으나, 수출의 경우에는 선박탱커(수출증가율 146% 수출실적 2위), 수입의 경우에는 면사류에 대한 견해만 유효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예측은 수출에 있어서는 정밀의료기기, 수입의 경우에는 의약품 원료와 두발용 화장품을 수출입 유망품목으로 제안한 바 있으나 유효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산업연구원은 기계·자동차·화학·철강 순으로 제조업의 수출이 증대될 것이고 화학·섬유·기계 분야의 수입이 증대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나 수출은 HS Chapter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유효하다할 수 있으나 HS 10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철강품목이 유효하고 수입의 경우에는 화학과 섬유품목이 유효하였다.

IV. 결 론

외형적으로 볼 때, 한·인도 CEPA로 인하여 한국이 인도로부터 단기적으로 효과있는 양허를 받은 수출품목은 460개(이 가운데 관세철폐의 대상품목은 280개)였고 나머지 품목은 장기적인 세율의 인하를 전제로 한 협상이었다. 그러므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점진적인 양국의 긴밀한 협력과 상승작용을 적절히 조화시켜 교역량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 정부기관이나 관련 유관기관의 입장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검증한 한·인도의 수출입실적 및 수출유망품목에 대한 각종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인도의 양허수준 및 세율의 조정 폭은 한국의 입장 보다 경직되어 있다는 것이다. 양국의 외형적인 교역량에 있어서는 인도가 한국보다 우월함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협정 안이 채택되었다는 것은 한국이 인도보다 적극적인 협상안을 제안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최근 들어 양국 간 교역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고 무역 의존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수출입 수지에 있어 한국은 인도로부터 흑자를 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한·인도 CEPA의 효과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정부기관이나 관련 유관기관이 예측했던 인도의 시장진출은 한·인도 CEPA를 계기로 긍정적인 효과를 인식시키기에는 적절하였으나, 검증된 바와 같이 수출유망품목에 대하여는 수출이 진작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수입에 있어서는 한국의 대인도 양허세율의 효과를 입은 나프타나 면사, 비철금속의 수입국 대체효과가 나타났고 이는 유효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정부기관과 관련 유관기관에서 예측한 수출유망품목은 민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유망품목을 제안하였다는 논리가 엿보이지만, 이는 기관의 책임회피에 불과하다. 좀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요구하는 단기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섯째, 수출실적 상위에 해당되는 품목을 기준으로 인도의 시장 동향을 보면, 제조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움직이고 있는 정도의 상황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인도시장의 진출을 위한 동기부여는 한·인도 CEPA 체결을 계기로 성과가 나타났으므로 다음단계는 한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제조업 산업의 효과적인 정

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한·인도 CEPA의 양허수준 및 양허세율에 근거한 진출 로드맵을 정부기관 및 관련 유관기관은 단기적으로 실효성이 있도록 민간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한편, 한·인도 CEPA가 발효된 이후 인도에 대한 경제적인 중요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다시 관조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일부 유력한 기업의 진출 및 교역에 국한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본고의 성격과 유사한 긍정적인 인도시장의 가능성을 홍보하기 위한 정부기관과 정부유관기관, 유관 연구소의 정책적인 배려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인도 CEPA 주요내용과 경제적 효과”, 2009. 9.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인도 CEPA 이후 수출유망품목 및 진출전략”, 2009. 8.
- 첸나이 KBC, “인도 제조업 5년 내로 중국 추격”, 2010. 6.
-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한·인도간 관세철폐, 의료기기 및 제약업체에 호재”, 보건복지가족부 통상협력 담당관실, 2010.8.6.
- 산업연구원, “한·인도 CEPA 체결이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 2009. 9.
- 외교통상부, 『한·인도 CEPA 공청회』 자료, 한국무역협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관, 2005.
- 중소기업연구원, “한·인도 CEPA와 중소기업”, 2010. 1.
- , “한·인도 CEPA 체결에 따른 중소기업의 영향과 대응과제”, 2009. 12.
- 주인도대사관, “인도 통상·투자 진출 안내서”, 2006. 12.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인도 CEP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와 향후 과제”, 2009. 8.
- 이윤정 외 4인, 『인도의 이해』, 도서출판 법현, 2010. 11. 25.
-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DATASTATISTICS/Resources~>
- 한국무역협회 통계자료 및 한국경제신문 2011년 1월 26일자

ABSTRACT

A Study on the Efficacy for Promising Ex-Importable Items of CEPA between Korea & India

- Focused on the Ex-Import Performance in 2010 -

Lim, Mok Sam

This paper study on the effect of the removal or reduction of the tariff on Korea-India trade by CEPA between Korea & India and then examines the effects of increased exports & imports to Korea on India.

Despite the analysis is based on data over a short period of time, this paper shows that CEPA between Korea & India has substantially increased Korean exports(42.7%) and imports(37%) to India in 2010. It is also shown that CEPA between Korea & India has had a considerable impact on market.

As a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The potential fields of expanding the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due to the tariff concessions of the removal or reduction. Consequently the effect of the removal or reduction of tariff will be low our expectation but CEPA between Korea & India w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Korea's exports to India in the long term.

This paper has examined the impact of CEPA between Korea & India on general economy. It needs a further study to estimate trade diversion effect of CEPA and to find out the impacts on specific industry.

Key Words : CEPA between Korea & India, CEPA, Tariff Concession